

■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10. 22.>
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14조의8제5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고,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2조의4 제4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의4 제4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
다. 법 제22조의4제5항에	법 제22조의4	경고	업무정지	지정 취소

다른 지정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	제4항제2호		3개월	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	-----	--